의 안 번 호	제 53 호
의결연월일	2003

의 결 사 항

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 출	자	사 천 시 장
제 출 연	월 일	2003. 12. 13.

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 ⁵³

제출일자 : 2003.0 12. 13 제 출 자 : 사 천 시 장

1. 제안이유

기존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기준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(ceiling제) 도입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·관리하기 위함

2. 주요골자

- 가.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(안 제4조의2)
 - 지원계획 수립·공고 → 신청·접수 → 심의 → 결과 통보
- 나.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(안 제4조의3, 제4조의4)
 - 구성: 지방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 교수, 공무원 등 9인이내
 - 기능 : 사회단체 육성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심의 등
- 다. 보조금의 별도계정 설정(안 제9조의2)

3. 법적근거

- 가. 지방재정법 제14조
- 나.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3항
- 다. 2004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- 4. 주요토의과제 : 없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따로붙임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의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
 - (1) 신・구조문 대비표: 따로붙임
 - (2) 입법예고
 - 가) 예고기간 : 2003. 9. 22~10. 13
 - 나) 예고방법 : 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
 - 다) 접수의견 : 없음
 - 라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사천시 조례 제 호

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보조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"사회단체"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보조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제4조의2 내지 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사회단체보조금) ①시장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립, 일정기간동안 공보,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.

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수립한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, 타 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,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 회부,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
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 원액을 결정하고, 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제4조의3(위원회의 구성) ①제4조의1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
-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-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
 - 1. 당연직 위원 : 총무·지역개발국장, 예산업무담당부서장
 - 2. 위촉직 위원 :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의 활동에 관한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
- ④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-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로 한다.
- 제4조의4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
 - 2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 - 3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
 -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·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.
 -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- 제5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동조제3항중 "제1항"을 "제1항 및 제2항"으로 한다.
 - ②사회단체보조금은 제4조의1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 시행시기에 맞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별도계정)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.

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,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8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 에서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	제2조(정의)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
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
제1호 내지 제3호(생략)	제1호 내지 제3호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"사회단체"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
	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
	는 단체를 말한다.
제4조(보조대상) (생략)	
제1호 내지 제3호(생략)	 제1호 내지 제3호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 보조를
	원칙으로 한다. 다만,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
	보조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
	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
	<u>수 있다.</u>
_<신 설>	제4조의2(사회단체보조금) ①시장은 매년 사회
	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, 지원규모, 지원절차
	등을 포함하는 사회단체보조금지원계획을 수
	립, 일정기간동안 공보, 인터넷 등을 통하여
	<u>공고하여야 한다.</u>
	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
	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장이 수립한 사회
	단체보조금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
	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
	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	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보조금
	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
	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의 필요
	성,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,
	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
	라 한다)에 회부,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.
	④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
	거쳐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,
	이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	현	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<신 설>	현	행 	제4조의3(위원회의 구성) ①제4조의1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. 1. 당연직 위원 : 총무·지역개발국장, 예산업무담당부서장 2. 위촉직 위원 :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의 활동에 관한 전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4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두되,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로 한다. 제4조의4(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) ①위원회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.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.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.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사항 4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. ④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
			못한다. ⑤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보조신청) ①(생략)	제5조(보조신청) ①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사회단체보조금은 제4조의1의 규정에 따라
	통보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시행시기에 맞
	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
	<u> 여야 한다.</u>
<u>②제1항</u> 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	③제1항 및 제2항 · · · · · · · ·
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	
제1호 내지 제9호(생략)	제1호 내지 제9호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별도계정)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
	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
	설정하고,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
	계리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제18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
	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천시위원회실
	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
	<u>를</u> 지급할 수 있다.
<u>제18조</u> (생략)	<u>제19조</u> (현행 제18조와 같음)

관계 법령 발췌

지 방 재 정 법

- 第14條 (寄附 또는 補助의 제한) ①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公共機關이 아닌 團體에 寄附・補助 또는 기타 公金의 支出을 할 수 없다.
 - 1. 法律에 規定이 있는 경우
 - 2. 國庫補助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國家가 지정한 경우
 - 3. 用途를 지정한 寄附金에 의한 경우
 - 4. 地方自治團體가 勸奬하는 事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과 地方自治團體가 勸奬하는 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지방재정법시행령

- 제24조 (공공기관의 범위등) ①법 제14조에서 "공공기관"이라 함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.
 -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"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"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.
 -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등에 대한 교부신청, 교부결정 및 사용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2004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

□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

- 정액보조단체별(13개단체) 상환기준을 폐지하되, 기존 임의보조 단체 +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 보조금 상환제(ceiling제) 도입
-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결정하되 합리적 재원배분을 위하여 자치단체별 『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』를 구성・운영

□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・운영

- 구성: 자치단체별 15인 이내
 - 지방의회의원, 민간전문가, 대학교수, 공무원 등
 - ※ 표준조례안 : 시도는 15인 이내, 시군은 9인 이내
- 근거 :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
- 운용요령
 - 절차 :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편성, 사회단체신청⇒심사⇒배분
 - 심사기준 : 자치단체별 상환액 범위내에서 사회단체의 사업실적, 사업계획, 단체의 특성 및 관계법령·조례의 지원근거 취지 등을 감안 심의
 - ※ 세부신청절차 및 신청서식, 심의위원회 운영요령 등은 자치단체 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